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2. 13.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2년 11월 23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2년 11월 24일

라. 상정일자: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2022. 11. 2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유옥준)

가. 제안이유

❍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선8기 주요정책 추진의 실행을 위한 조직 개편을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부서 신설 등(안 제6조, 제14조)

❍ 국·부서명 및 국 순서 변경(안 제3조, 제5조~제11조, 제14조)

❍ 사무분장 이관 및 신설(안 제6조~제9조)

❍ 부칙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 조례안은

- 변화하는 구민의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선8기 정책 목표와 핵심 사업의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시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 제14조는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으로 기획재정국의 사회적경제과를 폐지하고 지역경제과를 신설, 보건소에 보건지원과와 위생과를 통합하고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함.

구 분	하부 조직	
	현 행	개정안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보건소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 안 제3조, 제5조~제11조, 제14조는 국·부서명과 국 순서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정함.

구 분		현 행	개정안
명칭 변경	국	행정지원국	행정국
	부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장애인과
		보건지원과	보건위생과
국 순서 변경		기획재정국 ▸ 미래비전추진단 ▸ 복지국 ▸ 생활환경국 ▸ 안전교통국 ▸ 도시국 ▸ 행정지원국	**행정국** ▸ 기획재정국 ▸ 미래비전추진단 ▸ 복지국 ▸ 생활환경국 ▸ 안전교통국 ▸ 도시국

- 안 제6조~제9조는 사무분장 이관 및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조정함.

분장 사무	현 행	개정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 총괄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복지국 (복지정책과)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점용료	기획재정국 (재무과)	생활환경국 (가로경관과)
사회적경제 지원, 청년지원	미래비전추진단 (사회적경제과)	기획재정국 (일자리정책과)
반려동물 등에 관한 사항	-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또한 보건소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여 보건·위생, 감염병 예방관리 등 보건소의 사무를 명시함.

- 안 부칙 제2조는 한시기구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7조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검토 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새로운 환경 변화와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민선8기 주요정책 추진과 구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업무 보강으로 다양한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되나, 구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서명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해당 조례안의 구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서명을 수정함.

나. 수정내용

❍ 안 제8조제1항 중 “어르신장애인과”를 “어르신·장애인과”로 하고,

❍ 부칙 “어르신장애인과장”을 “어르신·장애인과장 ”으로 수정함.

5.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8	관 련 번 호

제안연월일: 2022. 11. 25.
제 안 자: 우경란 의원 외 1명

1. 수정이유

❍ 해당 조례안의 구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서명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함.

2. 수정내용

❍ 안 제8조제1항 중 “어르신장애인과”를 “어르신·장애인과”로 하고,

❍ 부칙 “어르신장애인과장”을 “어르신·장애인과장 ”으로 수정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어르신장애인과”를 “어르신·장애인과”로 하고, 부칙 “어르신장애인과장”을 “어르신·장애인과장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어르신·장애인과를 둔다.

부 칙

제6조제3항 중 “어르신복지과장”을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어르신복지과장”을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88 호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 대응 및 민선8기 주요 정책 추진의 실행력 뒷받침을 위한 조직 개편을 시행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서 신설(안 제6조, 안 제14조)

1) 지역경제과, 감염병관리과 신설

나. 국, 부서명 변경(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14조)

1) 행정지원국 → 행정국

2)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정책과, 사회복지과 →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복지과 → 아동청소년과,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장애인과
보건지원과 → 보건위생과

다. 업무이관(안 제8조, 안 제9조)

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 총괄

2)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점용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생 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단장 및 담당관·과장·동장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국장·단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 본청·보건소의 담당관·과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 본청·보건소·동의 담당관·과장·동장 등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구 본청

제3조(국·단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 기획재정국, 미래비전추진단,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5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관리, 인사, 직원능력개발 및 후생복지, 의회협력, 법제심사에 관한 사항
2. 구정홍보, 구정의 정보화, 전산운영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3. 동 행정 지원, 자원봉사,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회진흥단체 지원 총괄, 지역협치,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재 및 문화·예술, 생활체육, 체육시설,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5. 문서관리, 민원처리,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 통합 인허가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획·조정, 구정비전 개발, 주민소통, 예산, 대내외 평가, 통계에 관

한 사항

2. 지역경제진흥, 유통, 전통시장 활성화, 반려동물 등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지원, 사회적경제 지원,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

4. 국·공유재산관리, 계약, 물품관리, 지출에 관한 사항

5. 구세입 총괄 및 지방세 징수, 세외수입 총괄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부과,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미래비전추진단) ① 미래비전추진단에 비전협력과, 미래교육과를 둔다.

② 미래비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교류, 국제금융지구 활성화, 의료특구에 관한 사항

2. 교육정책, 학교지원, 도서관 운영, 과학육성, 평생교육,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어르신장애인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서비스 지원·개발·연계·관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2. 생활보장,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의료급여,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3. 보육, 여성정책,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드림스타트, 외국인, 다문화에 관한 사항

5. 어르신 복지시설, 고령화 대책,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제9조(생활환경국) ① 생활환경국에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푸른도시과를 둔다.

② 생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점용료, 노점상·가로정비 및 전문건설업 관리,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 환경공무관,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기·수질·토양오염 관리,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소음·진동 대책,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원의 개발 및 관리, 녹지보전, 조경계획·조경시설 및 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안전교통국) ① 안전교통국에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를 둔다.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방재계획 수립, 재난 예방, 재난 복구대책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2. 도로계획 수립·조정,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도로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수사업, 하천·유수지, 수방대책, 배수펌프장과 수문 기전 설비에 관한 사항

4. 교통행정, 자동차와 건설기계등록, 교통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5. 주·정차 지도 단속, 교통시설 설치, 주차장에 관한 사항

제11조(도시국) ① 도시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사업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관리, 주택사업, 시장재건축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관리형), 무허가건축, 주택임대사업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및 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재개발·재건축사업,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건축물대장 관리, 건축허가·착공·준공, 건축물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토지관리·토지조사 및 지적, 개별공시지가,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 토지의 사용·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2조(보건소의 설치) ①「지방자치법」제126조,「지역보건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보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13조(보건소장)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 업무와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보건소) ①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의약과를 둔다.

② 보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평가, 보건·위생 민원처리, 식품위생업소·식품제조업소 허가 및 관리,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예방·관리, 소독업 허가 및 시설관리,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 예방접종 업무 및 국가예방접종 사업, 운동·영양·금연·절주에 관한 사항

3. 모자보건, 노인보건, 정신건강, 장애인 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4. 의료인·의료기관 지도점검, 의료기사·안경사 지도, 약사 및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보건에 관한 실험·검사, 의료용 방사선 안전관리,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15조(직무) ①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② 동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회관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관리한다.

③ 동은 동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한다.

제16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관할구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그리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행정동의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에 따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의2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행정지원국”을 “행정국”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일자리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지원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아동청소년복지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어르신복지과장”을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어르신복지과장”을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지원과장”을 “감염병관리과장”으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보건지원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보건지원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㉒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위생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위생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2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38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지역